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645
------	------

2026. 4. 2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6년 4월 15일
-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6.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민생노동국장 이해선)

1. 제안이유

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악화된 대외여건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 신규편성 및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함.

나. 이에 따라 안정적인 보증 공급 및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2026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며,

다.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주요사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다. 2026년 출연금액(안) : 47,970백만원

- '26년 출연금 본예산 28,710백만원에 1차 추경(안) 19,260백만원 증액하여 총 47,970백만원으로 출연금 추계
- 산출근거 : (붙임2) 참조

Ⅲ. 검토의견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2. 서울신용보증재단 현황

-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1999년에 설립됨.
- 현재 동 재단은 본부(2부문 4실 8부 1센터)와 영업점(2지역본부 2부 29센터)에 임원 3명, 정규직 492명, 기간제 125명을 포함하여 620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인력 현황 >

(2026. 3월 말 기준)

구 분	정 원 內					정 원 外		합 계
	소 계	임 원	정규직			소 계	기간제 근로자	
			일반직	전문직	지원직			
현 원(명)	495	3	435	27	30	125	125	620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한편 서울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공급(총 3조 6천억원)을 위해 287억 1천만원을 출연하였고, 3월말 기준으로 1조 394억 원(28.9%)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였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지원실적 >

(2026. 3월 말 기준, 단위: 억원)

구분		계획	실적	달성률
보증공급		36,000	10,394	28.9
신규보증		22,000	5,954	27.1
대환보증		3,000	583	19.4
기한연장		11,000	3,857	35.1

- 그러나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사태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3. 추가 출연의 적정성 검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동의안은 서울시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한 동 재단의 추가출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추경예산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당초 287억 1천만원에서 192억 6천만원이 증액된 479억 7천만원이 편성됨.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출연금	47,970	28,710	19,260

- 이는 보증료재원 112억 6천만원과 신용보증재원 80억원으로 구성되며,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용자지원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용자에 수반되는 보증료 지원과 보증공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대응 자금을 신설하고, 기존 자금(희망동행자금, 서울배달상생자금, 신속드림자금)을 증액하여 용자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지원 확대 및 출연금 세부내역 >

구분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대응 자금	희망동행자금	서울배달상생자금	신속드림자금
지원대상	중동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에서 인정한 서울배달상생기업	저신용,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 소상공인
지원규모	1,000억원 (신설)	4,500억원 (당초 3,000억원, 1,500억원 증액)	400억원 (당초 200억원, 200억원 증액)	800억원 (당초 500억원, 300억원 증액)
지원조건	5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2년간 2.5% 3년간 1.8%, 1년 가치 4년 균분상환	1억원 이내, 이차보전 1.8%, 2년 가치 5년 균분상환	1억원 이내, 이차보전 2.0% 1년 가치 4년 균분상환	3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1.8%, 1년 가치 4년 균분상환
출연금 ²⁾	114억원	73억 5천만원	-	5억 1천만원
보증료 재원	34억원	73억 5천만원	-	5억 1천만원
	신용보증 재원	80억원	-	-

- 먼저 보증료 지원은 동 재단이 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소상공인 등이 지불하는 보증료를 서울시가 출연금을 통해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경감시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2) 희망동행자금은 대한대출의 특성상 신용보증재원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으며, 서울배달상생자금은 보증료를 미지원하고 신용보증재원은 신한은행이 특별출연할 예정임. 또한 신속드림자금의 신용보증재원은 카카오뱅크에서 특별출연할 예정임.

- 그러나 일부 정책자금에 한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원대상 간 형평성, 도덕적 해이, 재단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바, 향후 정책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그리고 신용보증재원은 재단의 기본재산을 구성하는 재원으로, 보증한도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15배 이내)³⁾을 고려할 때 신용보증재원의 출연은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확충하는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따라 동 재단의 보증공급은 연초 계획 대비 3천억원이 증액된 3조 9천억원으로 운용될 예정으로, 신용보증재원 80 억원을 추가 출연함으로써 8.6배수 내외의 운용배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서울시 출연에 따른 보증공급 규모 및 운용배수 전망 >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예상)	
				본예산	추경예산
보증공급액	31,349	31,366	35,918	36,000	39,000
(A) 보증잔액	97,313	80,859	70,047	75,000	75,000
연간 출연금 조성액	1,191	1,120	1,576	1,352	1,432
서울시	100	189	286	232	312
정 부	129	3	53	20	20
자치구	113	44	93	100	100
금융회사 법정 출연	120	138	181	121	121
금융회사 등 협약출연	729	746	963	879	879
당기순손실	1,512	2,052	1,225	1,630	1,65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	-2	-7	0	0
(B) 기본재산	9,477	8,547	8,905	8,627	8,684
운용배수=(A/B)	10.3	9.5	7.9	8.7	8.6

- ※ 연간 출연금 조성액은 보증료 보전재원 및 브릿지 보증 재원을 제외한 신용보증재원 기준임
- ※ 기본재산=전년도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당해연도 당기순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순자산 보정)
- ※ 상기 내용은 업무계획 등에 기반한 예상 수치이며, 보증공급 및 부실 발생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와 같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이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경영 안정과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경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
- 따라서 피해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추경예산 확정 이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보증심사, 대출 실행 등의 행정절차가 지연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증공급 확대 및 경기 여건 변화에 따라 부실 발생 가능성 및 손실 규모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재단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645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1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악화된 대외여건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 신규편성 및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함
- 나. 이에 따라 안정적인 보증 공급 및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2026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며,
- 다.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나. 주요사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등
- 다. 2026년 출연금액(안) : 47,970백만원
 - '26년 출연금 본예산 28,710백만원에 1차 추경(안) 19,260백만원 증액하여 총 47,970백만원으로 출연금 추계
 - 산출근거 : (붙임2)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김효진(☎2133-5190)

- 붙임 1.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관 현황
2.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3. 이사회 의사록
 4. 결산보고서